# 서울특별시 강사구 공용의 청사건립가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019-12 제출년월일 : 2019년 4월 일

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#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2019. 2. 1.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1국(미래경제국)이 신설되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조례에 규정된 정원수를 초과하여, 개편된 조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 변경 : <u>14명 → 16명</u>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-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기획예산과 : 규제심사

2) 감사담당관 : 부패영향평가

3) 가족정책과 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일(2019년 3월 14일 ~ 4월 3일)

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14명"을 "16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	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
치 및 구성) ① (생 략)	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	②
각 1명을 포함한 <u>14명</u> 이내의	<u>16명</u>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	
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	
금담당국장이 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